

②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판보 및 도보의 내용 중 시민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발췌하여 게재한다.

제5조(배부기준) 시보는 국가기관, 각 시·도와 시·군·구 및 동 등 필요한 기관과 관련단체, 시의원, 동·반장까지 배부한다.

제6조(편집주간 및 보조원) ① 시보 편찬을 위하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편집주간과 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편집주간과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정액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가. 주 간 : 지방별정 6급 15호봉대우 1명

나. 보조원 : 지방별정 7급 15호봉대우 1명

③ 편집주간과 보조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수당, 여비 등의 범위,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부천시여비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231
의 결 년 월 일	93. 12. 24 (제25회)

제출년월일 : 1993. 12.

제 출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 제안이유

- 보호자가 근로질병 또는 질병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유아를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
-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함.

☐ 주요골자

- 보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탁교육 계약의 조건
- 위탁시설의 운영
- 운영경비의 지원
- 위탁시설 지도감독

부천시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천시보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보육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 방향 및 정책과 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시의 시행계획의 수립
2.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에서의 비용 수납에 관한 사항
5.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하되, 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가,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4조(회의와 역할 등) ①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회의가 성립된다.

② 간사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5조(위원회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위탁운영) ① 시립 어린이 집의 운영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어린이 집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시장에게 신청하며 시장은 부천시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적이고 운영능력을 갖춘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제7조(위탁계약)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기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수탁자가 더이상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공익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위탁시설의 운영) ① 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보육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를 정한다.

②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수탁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년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보육위원회에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체결된 어린이 집 위탁운영 약정은 이 조례 공포 후 3개월 내에 계약 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2
의 결 년 월 일	93. 12. 24 (제25회)

제출년월일 : 1993. 12.

제 출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3의 규정과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중 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함)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조사에 관한 조사대상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08조 및 1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 중 91. 12. 14일자로 소방업무가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대상 기관 중 부천소방서를 삭제하고 하수종말처리사업소를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91. 12. 14 법률 제4419호로 소방행정 업무가 광역업무체제로 전환
- 부천시행정사무감사에관한조례 내용 중 부천소방서 및 소방공무원승진심사위원회 삭제(안 제5조 제1항)
- 하수종말처리사업소의 신설로 감사 조사 대상기관 신설(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